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00
----------	-------

발의연월일 : 2025. 9. 16.

발 의 자 : 윤준병 · 안호영 · 이성윤
한병도 · 위성곤 · 서영교
송옥주 · 박홍배 · 임호선
허성무 의원(10인)

제안이유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고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등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군수 등은 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를 통하여 사업 지원 여부 및 투자내용 및 투자 분담비율 등을 포함한 농촌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다만, 시장·군수 등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이 가능한 현재의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농촌협약이 시·군 등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농촌협약의 성과관리 및 이행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시장·군수 등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외에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을 통해서도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 등이 제출하는 농촌협약 이행실적 보고서의 세부 내용 및 절차 규정을 명확히하여 농촌협약 이행에 대한 시장·군수 등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시장·군수 등이 기본계획 수립을 토대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신설함(안 제2조, 제11조의2).
- 나. 시장·군수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농촌협약 이행실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내용 및 보고서 제출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18조).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군수 등이 체결한 농촌협약의 유지가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라. 시장·군수 등이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동시에 농지전용 허가의 의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1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시행계획”을 “시행계획, 농촌특화지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시행계획”을 “시행계획과 농촌특화지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7의2. “농촌특화지구계획”이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토대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고, 지정된 농촌특화지구의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6조제3항제9호 중 “시행계획”을 “시행계획 그리고 농촌특화지구계획”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기본계획과”를 “기본계획,”으로, “시행계획”을 “시행계획 또는 제11조의2의 농촌특화지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본계획이나”를 “기본계획,”으로, “시행계획”을 “시행계획 또는 제11조의2의 농촌특화지구계획”으로, “60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60일이”를 “30일이”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시장 또는 군수는”으로,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6조에 따라 농촌협약을 체결한 특별자치시장이 농촌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변경하여 확정하는 경우에도 제5항후단과 같이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 등) ① 계획수립권자는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농촌특화지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특화지구의 위치 및 면적
2.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농촌특화지구의 종류에 적합한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계획 등 농촌공간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농촌특화지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승인 및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4항 중 “시행계획”은 “농촌특화지구계획”으로 보고, 제11조 중 “시행계획”은 “농촌특화지구계획”으로 본다.

제13조제1항 중 “시행계획”을 “시행계획 또는 농촌특화지구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시행계획 수립”을 “시행계획 또는 농촌특화지구 계획 수립”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① 농촌협약을 체결한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농촌협약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매년 3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이행 현황 및 농촌협약 대상 사업의 이행 현황
2. 농촌협약 이행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성 및 운영 현황
3. 목표 달성도 및 성과

② 농촌협약을 체결한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협약 종료 시점의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농촌협약 전체 기간 동안의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촌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농촌협약으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농촌협약 신청 서류에 거짓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 보고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 그 밖에 협약의 유지가 어려운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제27조제1항 중 “시행계획”을 “시행계획 또는 농촌특화지구계획”으로 한다.

제31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계획수립권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촌특화지구의 지정과 동시에 제1항제9호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행계획 또는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 또는 농촌특화지구계획을 확정하는 때에 「농지법」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시사가 시행계획 또는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 또는 농촌특화

지구계획을 확정하는 때에 제1항제9호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때에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

제3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

제34조제2항제2호 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총괄·조정·관리

제35조제3항제3호 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각각 “기본계획, 시행계획 또는 농촌특화지구계획”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기본계획, 시행계획 또는 농촌특화지구계획”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이란 농촌의 경제적 · 사회적 · 환경적 변화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함께 삶터 · 일터 · 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회복 또는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으로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u>시행계획</u> 으로 구분한다.	4. ----- ----- ----- ----- ----- ----- ----- ----- ----- <u>시행계획, 농촌 특화지구계획</u>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란 시 · 군(광역시 의 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자치시 소재	6. ----- ----- ----- ----- ----- ----- -----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기능의 재생 또는 증진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u>시행계획</u>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 ----- ----- ----- ----- <u>시행계획과 농촌특화지구계획</u> -----.
7. (생략) <u><신설></u>	7. (현행과 같음) 7의2. “<u>농촌특화지구계획</u>”이란
	<u>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토대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고, 지정된 농촌특화지구의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u>
8. ~ 10. (생략)	8. ~ 10. (현행과 같음)
11. “<u>농촌협약</u>”이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u>지방자치단체의 장</u>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11. ----- ----- ----- ----- <u>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u>----- -.
12. ~ 17. (생략)	12. ~ 17. (현행과 같음)
제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 ①·② (생략) ③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제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8. (생략)

9.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농촌공간 재구조
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작성
에 관한 사항

10. (생략)

④ ~ ⑥ (생략)

제8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계
획수립권자는 기본계획과 제10
조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
생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
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
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지방의회는 계획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이나 제10조의 농촌공
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

-----.

1. ~ 8. (현행과 같음)

9. -----

----- 시행계획 그리고
농촌특화지구계획-----

10.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
----- 기본계획, -----

-- 시행계획 또는 제11조의2의
농촌특화지구계획-----

-----.

② -----
기본계획, -----
----- 시행계획
또는 제11조의2의 농촌특화지
구계획----- 30일 이내---

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의
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
생 시행계획의 승인) ① (생
략)

②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시
행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
시장이 시행계획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생
에너지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환경부장관과 협
의하고 제33조에 따른 광역농촌
공간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

③ · ④ (생략)

⑤ 제16조에 따라 농촌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
촌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
계획을 변경하고 광역시장, 도
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
다. 이 경우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
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

----- 30일이 -----
-----.

제11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
생 시행계획의 승인) ① (현행
과 같음)

②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시장 또는 군수 -----

----- 특별자치도지사의 승
인-----
-----.

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

⑥ 제16조에 따라 농촌협약을 체결한 특별자치시장이 농촌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변경하여 확정하는 경우에도 제5항후단과 같이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의2(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 등) ① 계획수립권자는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농촌특화지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특화지구의 위치 및 면적
2.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농촌특화지구의 종류에 적합한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계획 등 농촌공간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③ 농촌특화지구계획에 대한 의

	<u>건청취, 승인 및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4항 중 “시행계획”은 “농촌특화지구계획”으로 보고, 제11조 중 “시행계획”은 “농촌특화지구계획”으로 본다.</u>
제13조(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u>시행계획</u> 이 승인되거나 확정되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3조(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① ----- --- <u>시행계획 또는 농촌특화지구계획</u>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주민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u>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과 제13조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지정</u> 을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른 도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5조(주민제안) ① ----- ----- <u>시행계획 또는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u> ----- ----- ----- -----. ----- ----- -----.
제16조(농촌협약의 체결 등) ①·	제16조(농촌협약의 체결 등) ①·

② (생 략)

③ 농촌협약을 체결한 농림축산
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필요한 예산을 편성
하는 등 농촌협약의 이행에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농촌
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농촌협약의 신청) ① (생
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농촌협약의 신청 기간, 처리 기
간, 절차 등을 따로 정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농촌협약의 평가) ① 농촌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협약의 이행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

-----.

제17조(농촌협약의 신청) ① (현
행과 같음)

② -----

----- 시장
·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
---.

제18조(농촌협약의 평가) ① 농촌
협약을 체결한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농촌협약 이행실
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
에 보고하고 매년 3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이행 현황 및 농
촌협약 대상 사업의 이행 현
황

<신 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농촌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농촌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농촌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② (생략)

<신 설>

2. 농촌협약 이행을 위한 추진 체계의 구성 및 운영 현황

3. 목표 달성도 및 성과

② 농촌협약을 체결한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협약 종료 시점의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농촌협약 전체 기간 동안의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

-----, -----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
-----.

제19조(농촌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촌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필요

	<u>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농촌협약으로 정한 사항을 성 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u> 2. <u>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 장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농촌협약 신청 서류에 거짓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 거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 보고서 제출을 거부 하는 경우</u> 3. <u>그 밖에 협약의 유지가 어려 운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경 우</u>
제2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 생 사업계획의 수립) ① 사업시 행자는 <u>시행계획</u> 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이하 “사업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 다.	제2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 생 사업계획의 수립) ① ----- ----- <u>시행계획 또는 농촌특화 지구계획</u>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 의제) ① ~ ③ (생 략)	제31조(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 의제) ① ~ ③ (현행과 같 음)
<u><신 설></u>	④ <u>계획수립권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촌특화지구의 지정</u>

<신 설>

제33조(광역·기초농촌공간정책
심의회의 설치 등) ① (생략)

② 광역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과 동시에 제1항제9호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 도지
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
행계획 또는 농촌특화지구계획
의 승인을 받거나 특별자치시장
이 시행계획 또는 농촌특화지구
계획을 확정하는 때에 「농지
법」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도사가 시행계획 또는 농
촌특화지구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 또는
농촌특화지구계획을 확정하는
때에 제1항제9호에 따른 농지전
용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2
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때에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3조(광역·기초농촌공간정책
심의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u>기본계획 및 시행계획</u> 2. · 3. (생략) ③ 기초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u>기본계획 및 시행계획</u> 2. ~ 4. (생략) ④ (생략) 제34조(지원조직) ① (생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을 둘 수 있다. 1. (생략) 2. <u>기본계획 및 시행계획</u> 등의 평가 3. ~ 8. (생략) ③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1. (생략)	1. <u>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u> 2. · 3. (현행과 같음) ③ ----- -----. 1. <u>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u> 2.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지원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현행과 같음) 2. <u>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u> ----- -- 3. ~ 8. (현행과 같음) ③ ----- ----- ----- ----- -----. 1. (현행과 같음)
---	--

<u>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총 괄 · 조정 · 관리</u>	<u>2.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농촌 특화지구계획의 총괄 · 조정 · 관리</u>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① · ② (생 략)	제35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이 하 “기초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u>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 한 수립 지원</u>	3. <u>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농촌 특화지구계획</u> -----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8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 생 계획의 수립 ·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① 농림축산식품 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u>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 실태를 감독하기 위하여</u>	제38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 생 계획의 수립 ·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① ----- ----- ----- <u>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농촌특 화지구계획</u> -----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u>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u>이 기본방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u>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u>을 조정하여야 한다.	----- ----- ----- ----- -----. ② ----- <u>기본계획, 시행계획 또는 농촌특화지구계획</u>----- ----- ----- -----. ----- ----- <u>기본계획, 시행계획 또는 농촌특화지구계획</u>----- -----.
제41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① 계획수립권자는 <u>기본계획과 시행계획</u>에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제41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① ----- <u>기본계획, 시행계획 또는 농촌특화지구계획</u>----- ----- -----. ② ~ ⑦ (현행과 같음)